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검 토 보 고 서

1996. 12.

교 육 사 회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목 차

□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1. 예산안 총괄 -----	215
가. 세입예산안 규모 -----	215
나. 세출예산안 규모 -----	215
2. 예산안 개요 -----	217
가. 세 입 내 역 -----	217
나. 세 출 내 역 -----	218
3. 검토 의견 -----	220
가. 세 입 -----	220
나. 세 출 -----	221

※ 참고 자료

□ 시설비 내역 : 별첨

□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분		'97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금액	%	금액	%	금액	%
합계		695,429,116	100	627,561,246	100	67,867,870	10.8
국가부담 수입	소계	632,124,984	90.9	564,912,158	90.0	67,212,826	11.9
	지방재정교부금	440,080,568	63.3	420,835,090	67.2	19,245,478	4.6
	지방교육양여금	162,033,635	23.3	129,097,639	20.3	32,935,996	25.9
	교육환경개선교부금	28,561,000	4.1	11,299,000	1.9	17,262,000	152.7
	국고지원금	1,449,781	0.2	3,680,429	0.6	△ 2,230,648	△60.6
지방자치단체 회계수입	소계	3,805,230	0.5	4,254,484	0.7	△ 449,254	△10.6
	법정전입금	3,692,000	0.5	3,432,000	0.5	260,000	0.4
	비전법입정금	113,230	0	822,484	0.2	△ 709,254	△86.2
지방자치단체 특별회수 비계입	소계	59,498,901	8.6	58,231,084	9.3	1,267,817	2.2
	재산수입	538,399	0.1	1,279,714	0.2	△ 741,315	△57.9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37,867,732	5.4	34,956,522	5.6	2,911,210	0.8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427,440	0.1	369,981	0.1	57,459	15.5
	잡수입	4,585,329	0.7	4,423,148	0.7	162,181	3.7
	이월금	16,080,000	2.3	17,201,718	2.7	△ 1,121,718	△6.5
	지방교육채	1	0	1	0	0	0
주민부담수입	주민(기관 등)부담금	1	0	163,520	0.1	△ 163,519	△100

※ '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275억6천1백만원에 비하여 10.8%에 해당하는 678억6천7백만원 증액된 6,954억2천9백만원의 규모임.

나.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분	'97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금액	%	금액	%	금액	%
합계	695,429,116	100	627,561,246	100	67,867,870	10.8
교육위원회비	712,540	0.1	737,175	0.1	△24,635	△3.3
교육행정비	483,411,046	79.2	451,677,684	71.1	31,733,362	7.0
교육사업비	4,732,438	0.8	4,886,888	0.7	△154,450	△3.2
학교비	59,471,077	7.8	45,910,029	6.6	13,561,048	29.5
사학지원비	47,325,942	7.0	43,549,878	6.4	3,776,064	8.7
시설비	97,054,163	4.6	78,112,201	14.6	18,941,962	24.2
제지출경비	3	0	3	0	0	0
예비비	2,721,907	0.5	2,687,388	0.5	34,519	1.3

2. 예산안 개요

가. 세입 내역

첫째, 국가부담수입은 6,321억2천4백만원의 규모로

전년도 예산액 5,649억1천2백만원에 비해 11.9%인 672억1천2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00억 8천만원
○지방교육양여금	1,620억 3천 4백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285억 6천 1백만원
○국 고 지 원 금	14억 4천 9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38억5백만원의 규모로

전년도 예산액 42억5천4백만원에 비해 10.6%인 4억 4천 9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법 정 전입금	36억 9천 2백만원
○비법정 전입금	1억 1천 3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594억9천8백만원의 규모로

전년도 예산액 582억3천1백만원에 비해 2.2%인 12억6천7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재 산 수 입	5억 3천 8백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378억 6천 8백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4억 2천 7백만원
○잡 수 입	45억 8천 5백만원
○이 월 금	160억 8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나. 세출 내역

첫째, 교육위원회비는 7억1천2백만원의 규모로

전년도 예산액 7억 3천 7백만원에 비하여 3.3%인 2천4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급여관리비	4억 3백만원
○의정활동비	2억 3천 7백만원
○의사국 운영비	7천 1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둘째, 교육행정비는 4,834억1천1백만원의 규모로

전년도 예산액 4,516억 7천 8백만원에 비하여 7.0%인 317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급여관리비	4,676억 1천 8백만원
○교육행정기관운영비	131억 7천 6백만원
○교육지원기관운영비	26억 1천 7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셋째, 교육사업비는 47억3천2백만원의 규모로

전년도 예산액 48억 8천 6백만원에 비하여 3.2%인 1억 5천 4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사회교육비	1억 6천 8백만원
○체육사업비	15억 5천 7백만원
○재교육비	26억 4천 5백만원
○시험검정비	3억 6천 2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넷째, 학교비는 594억 7천 1백만원의 규모로

전년도 예산액 459억 1천만원에 비하여 29.5%인 135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학교운영비

·유치원	8억 2천 8백만원
·초등학교	351억 1천 2백만원
·중학교	101억 7천 4백만원
·고등학교	128억 5천 6백만원
·특수학교	5억 1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다섯째, 사학지원비는 473억 2천 5백만원의 규모로

전년도 예산액 435억 4천 9백만원에 비하여 8.7%인 37억 7천 6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사학운영지원비	452억 4천 5백만원
○사학시설지원비	3억 3천 2백만원
○사학교육환경개선지원비	17억 4천 8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여섯째, 시설비는 970억 5천 4백만원의 규모로

전년도 예산액 781억 1천 2백만원에 비하여 24.2%인 189억 4천 2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학교시설비	564억 9천만원
○교육환경개선학교시설비	379억 5천 2백만원
○기관시설비	26억 1천 2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일곱째, 예비비는 27억 2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비하여 1.3%인 3천 5백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음.

3. 검토 의견

'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6,954억 2천 9백만원의 규모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6,275억 6천 1백만원에 비하여 10.8%에 해당하는 678억 6천 8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가. 세 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의 의존수입이 6,321억 2천 5백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9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익,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594억 9천 9백만원으로 2.2%에 불과하여 거의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서 지방세 세수증대로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교육지원금의 감소로 감액계상된 특징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하여는 지역교육지원을 적극 유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부담 확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학교교육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여건상 자체수입 재원 확보의 예측이 어려운 실정으로

폐교학교의 관리적 측면과, 재산매각의 미확정에 따른 재산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입학금, 수업료 및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은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 현실화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액된 것으로, 교육자치에 따른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원인자부담원칙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할 것임

나. 세 출

○인건비는 4,704억 4천 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4,412억 7천 5백만원에 비해 6.6%인 291억 7천 4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교육공무원 10,835명, 일반직 공무원 3,120명, 전문직 공무원 219명 등 총 14,174명에 대한 제 인건비로 계상되었음

○교육위원회비는 7억 1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3천 7백만원에 비해

3.3%인 2천 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본청소관은 5,568억 8천 3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의 8.0%인 414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교육행정비 321억 7천만원
- 교육사업비 △1억 8천 5백만원
- 학 교 비 35억 8천 8백만원
- 사학지원비 29억 1백만원
- 시 설 비 29억 6천 4백만원

등이 각각 증액 또는 감액 계상되었음

○지역교육청 소관은 1,351억 1천 2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의 24.3%인 264억 2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 교육행정비 △4억 3천 7백만원
- 교육사업비 3천만원
- 학 교 비 99억 7천 4백만원
- 사학지원비 8억 7천 5백만원
- 시 설 비 159억 7천 8백만원

등이 각각 증액 또는 감액 계상되었음

○예비비는 27억 2천 2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의 1.3%인 3천 5백만원이 증액 계상된것임

특히 전년도 당초 예산편성에 비해 '97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 970억 5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시설공사의 착공시기에 따른 이월금액 발생이 적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등 세출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사료됨

이상과 같이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공통적인 사항]

- 교육감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교단선진화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사업 추진실적과 지도감독, 향후 예산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2 + 1』체제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과 현재의 추진상태는 어떤지 설명이 요구됨
-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규정에 의하여 노후교실 증·개축등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로 379억 5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의 우선 순위와, 배분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등에 대하여는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설명이 요구됨
- 초·중·고등학교 교당·급당운영비 운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지역 교육청과 연계)

[개별적인 사항]

- 공보담당관실운영, 교육관련기사 수신료로 3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육청 정보통신망 활용 방안은 없는지(p48)
- 기획감사담당관운영, 감사자료 6백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p49)
- 초등교육국운영에 교과연구회지원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성격 및 효과등에 관한 설명이 요구됨(p63)

- 중등교육국운영, 학생생활지도, 업무추진비 9백만원은 청소년 지도문제의 중요성으로 볼때 보다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될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p73)
- 관리국운영,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8억1천8백만원,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9억6천3백만원등은 관계부처의 지침 및 관련 법에 의거 계상편성되는 것인데 교육위원회에서 국고대여장학금 4억,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1억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이와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이유는 무엇이며 법에 의한 것이라면 향후 법을 고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노력해야 할 것이라 사료됨(p85, 86)
- 관리국운영, 공무상 재해보상금 3억원중 교육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됨 (p90)
- 중앙도서관운영, 장서구입비 4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입 품목의 선정과 구입 방법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p122)
- 학생종합야영장운영 냉방기 설치로 (강당) 3대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육생 훈련시설로서는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지 (p132)
- 학교보건관리, 학교보건 및 급식관계자 연구협회비로 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최근 학교보건 및 급식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민원은 없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140)
- 국가시험검정관리, 독학제도 업무추진여비 및 운영업무추진비로 7백6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입예산 p12와 관련하여 비교할 때 세출예산에 있어 과다 계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지 설명이 요구됨 (p140)
- 고등학교비, 조정(총주여고)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년도에 구입한 조정과 관련하여 설명이 요구됨 (p185)
- 고등학교 시설비, 충북전산기계공고(가칭) 신설비로 100억8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됨 (p211)

- 기타 학교시설비, 국립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비로 31억6천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립학교 교육환경개선비로 지원된 사유와 이에 따른 부대비는 소요되지 않는지 설명이 요구됨 (p217)
-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비,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20억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p218)
- 행정 및 지원기관시설, 중앙도서관시설 지붕방수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건축시기와 교육위원회에서 1천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이로 인한 공사추진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p219)

4. 참고 자료 : 별 첨